

## 2026년도 의정부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2026년도 의정부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 1. 대상인원 : 예산범위 내

### 2. 명예퇴직 대상요건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 예정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 3. 명예퇴직 제외요건

- 가.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 라.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마.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4. 명예퇴직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 비고 : 조직의 개폐 및 과원,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협의(퇴직예정일 등)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5. 명예퇴직 신청 방법 및 절차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붙임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의회행정팀)에 제출

## 6.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 가. 심사결정 :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 대상자 결정(예산범위 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자를 우선 고려)
- 나. 결정통지 : 수당지급 대상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다. 수당지급 :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7. 명예퇴직수당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 1>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60}{2}]$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 나.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 8. 기타사항

「명예퇴직원」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반드시 자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참고하거나 의회사무국 의회행정팀(행정전화 : 2523, 일반전화 : 031-828-2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b>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b>										
신청인 기재란	① 소 속				③ 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		④ 직(계)급 (호봉)			
	② 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⑤ 성명	한 글		⑥ 생년월일						
		한 자		⑦ 주 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형량:      )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⑬ 정 년		(세, 년)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년      월      확인 <input type="checkbox"/> 고용직		인사업무담당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      년      월 )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형량:      )					
		확인	인사업무 담당	(인)	연금업무 담당	(인)	감사업무 담당	(인)		
<p>「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p>										
<b>의정부시의회의장 귀하</b>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 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⑫ ~ ⑰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⑭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⑮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 되, 월 단위이하 잔여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⑰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 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의회의장 귀하